

[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1. 12. 6.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 ②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 ③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신규 자문위원 회의 개최
-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협정식 개최
-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2020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 전자표결시스템 도입
- 2022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가. 전문위원단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에 대한 심의

1)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쟁점 내역

-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양형인자 존치 여부, ②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단서 추가 여부, ③ '처벌불원' 정의 수정 여부, ④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행위 관련 설명 보

충 여부, 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기준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 ⑥ '미합의' 정의 규정, ⑦ 성범죄 등 범죄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지 여부, ⑧ 1-2 범죄군으로 분류된 성범죄 등을 살인범죄 등 다른 범죄와의 균형상 그 분류를 재검토할지 여부, ⑨ 성범죄 등 범죄에서 합의 관련 요소를 삭제하거나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할지 여부, ⑩ 성범죄 등 범죄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특별가중요소로 변경할지 여부, ⑪ 여성폭력범죄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할지 여부, ⑫ 성범죄 등 범죄에서 사용하는 '상당금액 공탁'이라는 용어를 변경할지 여부, ⑬ 임금 등 미지급에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명시할지 여부, ⑭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을 '일부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변경할지 여부, ⑮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일반가중인자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를, 합의 노력 위축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할지 여부

2) 심의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1. 10. 8.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단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심의

- 1)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관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문구를 삭제하거나 특정 범죄군에 한정할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1. 10. 8.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함
 - ※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문구를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현행 양형기준에 존재하는 범죄군에 한정하여 두자는 소수 의견 있었음
- 2) 공무집행방해범죄의 범죄군을 재분류할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1. 10. 8.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대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2-2 범죄군으로 유지하기로 함

다. 수정 양형기준 시행 시기

2022. 3. 1.을 시행 시기로 정하여, 2022. 3. 1.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

5.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가. 권고 형량범위와 관련된 유형의 분류 추가 심의

- 중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소유형으로 함께 분류하였던 ‘매매’와 ‘성적 학대’를, 두 범죄의 선고형량 분포, 법정형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리함

나. 권고 형량범위 심의 결과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범위 중 가중 영역을 7년 - 12년으로 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

6.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심의 결과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7. 다음 회의(제114차 회의) 일정

- 일시: 2022. 1. 24.(월) 오후 시간 미정
- 안건 :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의결
 ②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심의 및 원칙안 의결